

# NEWSLETTER

중대재해 대응센터 | Serious Accident Response Center

## CONTACT



중대재해 대응센터장  
김후곤

T: 02.6386.6230  
E: [hoogon.kim@leeko.com](mailto:hoogon.kim@leeko.com)



ESG센터장 시민석  
T: 02.6386.0852  
E: [minseok.si@leeko.com](mailto:minseok.si@leeko.com)



고문 신인재  
T: 02.6386.7984  
E: [injae.shin@leeko.com](mailto:injae.shin@leeko.com)



변호사 설동근  
T: 02.772.4881  
E: [tongkeun.seo@leeko.com](mailto:tongkeun.seo@leeko.com)



변호사 송현석  
T: 02.772.4691  
E: [hyunseok.song@leeko.com](mailto:hyunseok.song@leeko.com)

## 고용노동부, 2026년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시행

### … 불시점검, 법위반시 불관용 원칙

#### 1. 2026년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요지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중심의 2026년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전국 지방청에 시달하고 집중적 감독을 실시하기로 하는 사업장 안전보건감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6년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강화된 시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 1) 강력하고 효과적인 예방감독 행정추진

##### ① 감독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감독관을 증원하여 기동대응으로 적발 강화

- 감독대상을 확대(2.4만개소 → 5만개소+o)하고 감독관 인력을 대폭 증원 (2,095명)
- 전국 70개 이상 패트롤팀 운영을 통해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기별, 업종별 위험상황에 적시 대응하는 감독 실시, 수시형 감독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위험사업장을 감독대상으로 우선선정 하는 등 감독 효과성을 제고

##### ② 시정 없는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으로 ‘적발되면 그때 고친다’는 관행 근절

- 시정조치 위주인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은 폐지하고 점검 · 감독 시 위험성 평가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확인, 법 위반 시 시정지시 없이 바로 행정 · 사법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각심 제고
- 안전조치, 보건조치 위반 등 처벌조항 위반 확인 시에는 즉시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

\*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 신설, 지방노동관서 기관평가에 사법처리 실적 반영

\*\* 감독을 실시했더라도 개선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 실시(일회성 감독 지양)

### ③ 미준수 위험·불량 사업장에 대한 엄중한 행정조치로 경제적 제재 강화

- 사업장 감독 시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큰 위반사항은 시정조치 완료시까지 작업중단명령조치하고, 안전수준이 취약하다고 판단 시 안전보건 진단 또는 개선계획 수립이행 명령 집행으로 기업의 안전수준이 갖추어질 때까지 점검·감독
  - \* 제도개선: 중상해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 확산 가능성이 큰 경우 노동부장관의 긴급작업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과징금 부과(영업이익 5~10% 이내),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등 제재 강화 방안을 도입·추진하여 빠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실시 예정

### ④ 노동자 참여권 강화

-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 시 해당작업 노동자(하청노동자 포함) 현장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 위험요소 파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중심의 감독(노동자의 보호구 지급·착용 실태 등 기초안전수칙 준수 지도 강화도 병행)
  - \* 제도개선: 급박한 산재발생 우려 시 노동자 등의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의무 이행요구권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빠르면 하반기에 시행

## 2) 안전보건관리 역량별 차별화된 지원·감독 체계 마련

50인 이상 중대형 사업장 중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선정(지방관서, 감독관 1인당 10개소)하여 상시 위험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관리제도를 운영하고, 도급 책임 주체유형(공공발주·하청과 민간 사내하청)별로 감독을 실시하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달체계(길목) 확보·관리하고 선지원 후 감독 실시(3000개소)

## 3) 현장 밀착형 예방 감독 강화

상시패트를 점검 대상을 30,000개소 이상으로 하고, 월별로 테마별 위험요인에 대응하여 매월 첫째 월요일이 속한 1주간에 '현장집중점검 주간'을 운영하며, 노사 모두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토록 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기초안전수칙 계도 후 확인 및 단속을 실시

## 4) 재해 발생 사업장 관리강화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특별감독실시하고(570개소), 중상해재해 발생사업장 감독을 신설하여 감독을 실시하며(1000개소), 최근 3개월 내 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중 현장 위험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상황 모니터링 확인감독 실시(500개소)

## [2026년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감독계획 요지]

구분	2025년	2026년
감독관 증원	895명	2,095명 (안전일터지킴이 1,000명)
감독대상 규모	24,000개소	50,000개소 + α
감독원칙	사업장 자율규제	상시개입(위반시 불관용)
중점 감독방식	정기(사전안내후 점검)	수시(불시점검)
감독후 조치방법	시정조치 위주 (일회성 단속)	행정 및 사법처리 중심 (확인감독)

\*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先) 지원 후(後)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위험업종의 말단 사업장 목록 및 정보전달 통로 확보(길목확보) 후 안전일터 지킴이 1천 명을 투입하여 고용노동부 감독관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지도하고 재정·기술 지원 후 미개선사업장은 점검·감독 실시

### 2. 기업의 준비사항

고용노동부의 2026년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엄격한 수시점검 및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발 시 즉각적인 작업중지와 사업장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집중점검은 경제적, 형사적 처벌로 이어져 정상적 기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개선될 때까지 조업을 중지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기업의 선제적 대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강화된 점검에 대비하여 기업은 스스로 ① 안전보건관련 법규에 맞게 인적·물적·제도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였는지 점검하고, ② 특히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설비와 관리에 미비함이 없는지 중점 점검을 실행해야 하며, ③ 안전점검 및 지도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대재해처벌법의 반기점검을 겸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전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3.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원 계획

법무법인(유) 광장은 현장에서 다수의 지도·점검, 중대재해 사고 처리 및 재발방지 계획 수립지원, 특별점검 대응 등의 경험을 한 근로감독관 출신의 노무사, 변호사, 기업의 안전관리업무 담당 전문 자격 소유자를 중심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확인, 점검 및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광장의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안전관련 법적 리스크 제거 뿐만 아니라 안전 사고도 예방하는 다양한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



서울 | 서초, 서울 | 판교 | 북경 | 호치민시티 | 하노이  
02.772.4000 | mail@leeko.com | www.leeko.com